

難民認定手續案内

法務省
入國管理局

序言

難民認定手續案内 (第1版) 는 우리나라의 難民地位에 關한 條約 等에의 加入에
즈음하여 難民認定手續을 整備하기 爲해, 1981年에 一部 改正된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을 基초로 編集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假滞在許可制度
및 難民審査參與員制度의 創設을 內容으로 하는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의
一部를 改正한 法律이 2004年 5月 27日 第159回 通常國會에서 可決·成立되어
同年 6月 2日 공포됨에 따라, 從來의 手續案内를 加筆·修正하여 第2版을 發行,
今回 追加로 一時庇護手續에 關해 記載한 第3版을 發行한 것입니다.

2006 年 3 月
法務省入國管理局

目次

第 1	日本の 難民認定制度의 概要	1
第 2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누릴 수 있는 權利 또는 利益	2
	1. 永住許可要件의 一部 緩和	2
	2. 難民旅行證明書의 交付	2
	3. 難民條約에 定하는 各種의 權利	2
第 3	難民認定手續	3
	1. 申請手續	3
	(1) 申請期間	3
	(2) 申請窗口	3
	(3) 申請에 必要한 書類	3
	(4) 難民임의 立證	4
	2. 假滞在의 許可	4
	(1) 假滞在許可에 의한 滞在	4
	(2) 假滞在許可書	4
	(3) 假滞在期間 및 同期間의 延長	4
	(4) 假滞在許可의 條件	5
	(5) 假滞在許可의 取消	5
	3.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5
	4. 在留資格에 關한 許可	5
第 4	異議申請	6
	1. 異議申請手續	6
	(1) 異議申請人	6
	(2)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	6
	(3) 異議申請의 窗口	6
	(4) 異議申請에 必要한 書類	6
	2. 難民審査參與員	6
	3. 法務大臣의 決定	7
第 5	難民旅行證明書	8
	1. 申請窗口	8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8
	(1) 提出書類	8
	(2) 提示書類	8
	3.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	8
	4. 手數料	8
第 6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	9
	1. 申請	9
	(1) 對象者	9
	(2) 申請方法	9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9
(1) 提出書類	9
(2) 提示書類	9
3. 一時庇護許可書の 交付	9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 別表 第一 및 別表 第二	10
關聯團體의 一覽表	13
難民認定業務圖解	14

難民의 地位에 關한 條約 (以下 「難民條約」이라고 함.) 및 難民의 地位에 關한 議定書 (以下 「議定書」라고 함.) 가 1982 年 우리나라에 대해 發效되었음에 따라, 難民條約 및 議定書 諸規定의 國內 實施를 위해, 難民認定制度가 整備되었습니다. 이 制度에서는 難民인 外國人은 難民認定申請을 行하여 法務大臣으로부터 難民임의 認定을 받을 수 있고, 또한 難民條約에 規定된 難民으로서의 保護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難民」이라는 것은 難民條約 第 1 條 또는 議定書 第 1 條의 規定에 의해 定義되는 難民을 意味하며, 그것은 人種, 宗教, 國籍, 特定한 社會的 集團의 構成員, 또는 政治的 意見을 理由로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充分한 理由가 있는 恐怖로 인하여 國籍國의 밖에 있는 者로, 國籍國의 保護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願하지 않는 者로 規定됩니다.

難民認定手續은 外國人이 이 難民의 地位에 該當되는 지를 審査하여 決定하는 手續입니다.

第2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누릴 수 있는 權利 또는 利益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은 다음과 같은 權利 또는 利益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永住許可要件의 一部 緩和

日本에 在留하는 外國人이 永住許可를 받기 위해서는,

- ① 素行이 善良할 것
- ② 獨立의 生計를 영위할 수 있는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질 것

의 2件의 要件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難民의 認定을 받아 在留하는 外國人은 이 중에서 ②의 要件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法務大臣의 裁量에 의해 永住許可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難民旅行證明書の 交付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이 外國으로 旅行할 때에는 難民旅行證明書の 交付를 받을 수가 있으며, 難民旅行證明書を 所持하는 外國人은 그 證明書에 記載되어 있는 有效期間 內인 경우는 몇 번이라도 日本을 出國하여 日本에 入國할 수가 있습니다.

3. 難民條約에 定하는 各種의 權利

難民의 認定을 받은 外國人은 原則적으로 締約國의 國民 혹은 一般 外國人과 같은 取扱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國民年金, 兒童扶養手當, 福祉手當 등의 受給資格을 얻을 수가 있고, 日本國民과 같은 待遇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第 3 難民認定手續

1. 申請手續

(1) 申請期間

難民認定의 申請期間을 制限하는 規定은 없습니다.

(2) 申請窓口

難民認定의 申請은 申請者의 住所 또는 現在地를 管轄하는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에서 受理합니다.

申請은 申請者 本人이 스스로 出頭하여 申請하시기 바랍니다. 단, 申請者가 16 세 未滿인 경우 혹은 병, 기타의 事由로 인해 스스로 出頭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申請者의 아버지나 어머니, 配偶者, 子息 혹은 親族이 그 申請者를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地方入國管理局·支局에서의 窓口는 다음과 같습니다.

東京入國管理局	難民調査部門
成田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横浜支局	就勞·永住審査部門
大阪入國管理局	就勞·永住審査部門
關西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神戸支局	審査部門
名古屋入國管理局	永住審査部門
中部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広島入國管理局	入國·在留審査部門
福岡入國管理局	入國·在留審査部門
那覇支局	審査部門
仙台入國管理局	審査部門
札幌入國管理局	審査部門
高松入國管理局	審査部門

(3) 申請에 必要한 書類

申請에는 다음과 같은 書類가 必要합니다. 또, 부상 등 身體의 障碍 등으로 인해 難民認定申請書의 記載가 불가능한 外國人은 申請書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을 入國審査官 혹은 難民調査官에 陳述함으로써 申請書를 代身할 수도 있습니다.

① 提出書類

- 가. 難民認定申請書 (窓口に 準備되어 있습니다.) 1 通
- 나. 申請者가 難民임을 證明하는 資料 (難民임을 主張하는 陳述書로도 가능합니다.) 2 通
- 다. 寫眞 (提出전 2 개月 以內에 撮影된 5 cm×5 cm 의 脫帽, 正面上半身인 것으로, 뒷면에 姓名 및 生年月日을 記載할 것) 2 張
다만, 不法滯在者 등의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 (注) 인 경우는 寫眞을 3 張 提出한다.

(注) 在留資格未 取得外國人이란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 別表 第一 또는 別表 第二의 上欄의 在留資格으로서 우리나라에 在留하는 者,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를 받은 者로 當該 許可書에 記載된 期間을 經過하지 않은 者 및 特別永住者 이외의 者를 말한다. (10 페이지 以下를 參照할 것)

② 提示書類

- 가.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 (旅券 또는 在留資格證明書を 提示하지 못하는 外國人은 그 理由를 記載한 書面 1 通을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 나. 外國人登錄證明書 (外國人登錄證明書を 所持하는 경우)
- 다. 假上陸의 許可, 乘務員上陸의 許可, 緊急上陸의 許可, 遭難에 의한 上陸의 許可, 혹은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를 받은 外國人은 그 許可書
- 라. 假放免中の 外國人은, 假放免許可書

(4) 難民임의 立證

難民의 認定은, 申請者로부터 提出된 資料에 의거하여 실시됩니다. 따라서 申請者는 難民임의 證據 혹은 關係者의 證言에 의해 스스로의 立證이 要求됩니다.

또, 申請者가 提出한 資料만으로는 充分한 立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難民調査官이 公務所 등에 照會하여, 申請者의 陳述 내용의 事實 有無에 대해 調査하여, 難民의 認定이 適正히 實施되도록 힘씁니다.

2. 假滞在의 許可

不法滞在者 등의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이 難民認定의 申請을 한 경우는, 그 者의 法的 地位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해 當該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上陸한 날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동안에 難民이 되는 事由가 생긴 者에 있어서는, 그 事實을 안 날) 로부터 6 個月 以內에 難民認定申請을 행한 경우 또는 難民條約上의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直接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 등의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임시로 우리나라에 滞在하는 것을 許可하고, 그 동안은 退去強制手續이 정지됩니다.

또한, 假滞在許可의 判斷은 難民認定申請者가 提出한 難民認定申請書 등의 書類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別途로 假滞在許可를 申請할 必要는 없습니다.

(1) 假滞在許可에 의한 滞在

假滞在許可를 받으면 一時的으로 退去強制手續이 정지되어, 假滞在期間의 經過 등 當該 許可가 終了될 때까지는 適法하게 우리나라에 滞在할 수 있습니다.

(2) 假滞在許可書

法務大臣이 假滞在를 許可한 外國人에게는 假滞在許可書가 交付됩니다. 許可期間中에는 이 許可書を 항상 携帶하여야 합니다.

(3) 假滞在期間 및 同期間의 延長

假滞在期間은 原則적으로 3 個月입니다.

假滞在期間의 更新申請은 許可期限의 10 日前부터 받으며, 申請書는 各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의 窓口に 準備되어 있습니다.

(4) 假滞在許可의 條件

假滞在許可를 받은 者는 住居나 行動範圍가 制限되는 外에, 우리나라에서의 活動에 대해서도 就勞가 禁止되고, 또한 難民調査官의 出頭 要請이 있는 경우에는 指定된 日時, 場所에 出頭하여 難民認定手續에 協力할 義務를 지는 등 여러 가지 條件이 附加됩니다.

(5) 假滞在許可의 取消

假滞在許可를 받은 者가 그 附加 條件을 違反한 경우, 不正하게 難民認定을 받을 目的으로 僞·變造된 資料를 提出한 경우, 虛僞로 陳述한 경우 등에는 假滞在許可가 取消될 수 있습니다.

3. 難民認定證明書의 交付

法務大臣이 難民임을 認定한 外國人에게는, 難民認定證明書가 交付됩니다. 難民으로서의 各種의 保護 措置를 받을 때에 難民임의 證明이 要求될 경우에는 이 證明書を 提示하시기 바랍니다.

4. 在留資格에 關한 許可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이 在留資格未取得外國人으로서, 當該 外國人이 우리나라에 上陸한 날로부터 6 個月 以內에 難民認定申請을 한 者이거나 難民條約上의 迫害를 받을 우려가 있는 領域으로부터 直接 우리나라에 들어온 者인 경우 등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定住者의 在留資格이 一律적으로 附與됩니다.

또, 當該 外國人이 이러한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在留를 特別히 許可해야 할 事情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在留를 特別히 許可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 4 異議申請

1. 異議申請手續

(1) 異議申請人

難民認定申請을 행했으나 認定받지 못한 外國人이나 難民의 認定이 取消된 外國人은 法務大臣에 대해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2) 異議申請을 할 수 있는 期間

異議申請期間은 難民의 認定을 하지 않는다는 趣旨의 通知, 혹은 難民의 認定이 取消되었다는 趣旨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7 日 以內입니다. 다만, 天災 기타 부득이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7 日이 經過한 後라고 하더라도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3) 異議申請의 窓口

異議申請은 難民認定申請과 같이 異議申請人의 住所 또는 現在地를 管轄하는 地方入國管理局, 支局 및 出張所에서 受理합니다.

또, 代理人에 의한 異議申請이 認定되며 必要書類를 郵送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도 있습니다.

地方入國管理局, 支局에서의 異議申請의 窓口는 下記와 같습니다.

東京入國管理局	審判部門
成田空港支局	審判部門
橫濱支局	審判部門
大阪入國管理局	審判部門
關西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神戶支局	審査部門
名古屋入國管理局	審判部門
中部空港支局	審査管理部門
広島入國管理局	審判部門
福岡入國管理局	審判部門
那霸支局	審査部門
仙台入國管理局	審査部門
札幌入國管理局	審査部門
高松入國管理局	審査部門

(4) 異議申請에 必要한 書類

다음 書類를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가. 異議申請書 (窓口に 準備되어 있습니다.) 1 通

나. 異議申請의 理由를 立證하는 資料 (陳述書로도 가능합니다.) 1 通

2. 難民審査參與員

法務大臣은 異議申請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 難民審査參與員의 意見을 求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難民審査參與員은 異議申請에 關하여 公正한 判斷을 할 수 있고, 또한 法律 또는 國際情勢에 關한 學識經驗을 가진 者 중에서 選任됩니다.

3. 法務大臣의 決定

法務大臣이 異議申請은 理由가 있다는 趣旨의 決定을 하여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에게는 難民認定證明書가 交付됩니다.

難民으로 認定된 外國人은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 定住者의 在留資格이 附與되고, 우리나라에서의 在留가 認定됩니다.

또, 當該 外國人이 一定한 要件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在留를 特別히 許可해야 할 事情이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在留를 特別히 許可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第 5 難民旅行證明書

難民의 認定을 받아 在留하는 外國人이 日本을 出國하고자 할 때는 法務大臣으로부터 難民旅行證明書의 交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申請窓口

難民旅行證明書의 交付 申請 窓口는, 難民認定申請의 窓口 (第 3 의 1 의 (2) 參照) 와 같습니다. 申請은 本人出頭가 原則이나, 申請者가 16 세 未滿인 경우, 혹은 병, 기타의 事由로 인해 스스로 出頭하지 못할 경우에는, 申請者의 아버지나 어머니, 配偶者, 子息 혹은 親族이 그 者를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1) 提出書類

- 가. 難民旅行證明書交付申請書 (窓口に 準備되어 있습니다.) 1 通
- 나. 寫眞 (提出전 6 個月 以內에 撮影된 5 cm×5 cm 의 脫帽, 正面上半身인 것으로, 뒷면에 姓名 및 生年月日을 記載할 것) 2 張

(2) 提示書類

- 가. 旅券 혹은 在留資格證明書 (旅券 혹은 在留資格證明書を 提示할 수 없는 外國人은 그 理由를 記載한 書面 1 通을 提出하시기 바랍니다.)
- 나. 外國人登錄證明書
- 다. 難民認定證明書

3.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은 1 年입니다. 有效期間 中에는 몇 번이라도 日本을 出國하여, 日本에 入國할 수 있습니다. 단, 日本에서의 在留期間의 남은 기간이 1 年 未滿인 경우 등,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과는 別途로 「日本에 入國할 수 있는 期限」이 定해져 있을 때는 그 期限까지 日本에 入國해야 합니다. 日本에 入國할 수 있는 期限은 難民旅行證明書의 1 페이지의 2 에 記載되어 있으므로, 必히 이를 確認하여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과 混同하지 않도록 注意하십시오.

4. 手數料

難民旅行證明書의 交付를 받을 때, 所定의 手數料를 納付해야 합니다. 또, 外國에서 難民旅行證明書의 有效期間의 延長手續을 행하는 경우에도 所定의 手數料를 그 나라 通貨로 納付해야 합니다.

第 6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許可는, 船舶 등에 타고 있는 外國人이 難民條約에 規定하는 理由 기타 이에 準하는 理由로 인해 生命, 身體 또는 身體의 自由가 抑壓된 領域으로부터 피해 온 者로, 또한 그 外國人을 一時的으로 上陸시키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때에 入國審査官이 許可하는 것으로, 이는 「國家가 서둘러 保護하기 (領土的 庇護)」 위한 緊急措置로서 附與되는 것입니다.

1. 申請

(1) 對象者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타고 있는 外國人

(2) 申請方法

申請은, 到着한 空海港에 所在하는 入國管理局 등에 있어서, 申請者 本人이 스스로 出頭하여 해 주십시오. 단, 申請者가 16 歲 未滿인 경우나 疾病 기타의 理由에 의해 스스로 出頭할 수 없는 경우에는 父母, 配偶者, 子息 또는 親族이 代身하여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申請에 必要한 書類

(1) 提出書類

- 가. 外國人入國記錄 (通常 E/D 카드로 불립니다. 航空機 내에서 配布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空港이라면 航空會社 카운터나 入國審査 부스에서 入手할 수 있습니다.) 1 通
- 나. 申告書 (身分事項이나 申請의 理由 등을 記載하는 것으로, 空海港의 入國管理局에 備置되어 있습니다.) 1 通
- 다. 寫眞 (所持하는 경우) 2 張
- 라. 庇護를 求하는 理由가 있음을 證明하는 資料 (所持하는 경우) 1 通

(2) 提示書類

- 가. 旅券 등의 渡航文書 (所持하는 경우)
- 나. 身分을 證明하는 文書 (所持하는 경우)

3. 一時庇護許可書의 交付

審査의 結果, 一時庇護를 위한 上陸이 許可된 경우에는 一時庇護許可書가 交付됩니다. 同許可書에는 上陸其間, 住居 및 行動範圍 등의 上陸을 위한 條件이 記載됩니다.

出入國管理및難民認定法 別表 第一 및 別表 第二

別表 第一 (第 2 條의 2, 第 19 條 關係)

一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活動
外交	日本政府가 接受하는 外國政府의 外交使節團 혹은 領事機關의 構成員, 條約 혹은 國際慣行에 의해 外交使節과 같은 特權 및 免除를 받는 者 또는 이들과 同一한 世帶에 屬한 家族의 構成員으로서의 活動
公用	日本政府가 承認한 外國政府 혹은 國際機關의 公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그 者와 同一한 世帶에 屬한 家族의 構成員으로서의 活動 (이 表의 外交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教授	우리나라의 大學 혹은 이것에 準하는 機關 또는 高等專門學校에 있어서 研究, 研究의 指導 또는 教育을 하는 活動
藝術	收入을 동반하는 音樂, 美術, 文學 기타 藝術上的 活動 (二의 表의 興行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宗教	外國의 宗教團體에 의해 우리나라에 派遣된 宗教家가 행하는 布教 기타 宗教上的 活動
報道	外國의 報道機關과의 契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取材 기타 報道上的 活動

二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活動
投資·經營	우리나라에서 貿易 기타 事業의 經營을 開始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事業에 投資하여 그 經營을 하거나, 혹은 當該 事業의 管理에 從事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事業의 經營을 開始한 外國人 (外國法人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 있어서 同一)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事業에 投資한 外國人을 代身하여 그 經營을 하거나, 혹은 當該 事業의 管理에 從事하는 活動 (이 表의 法律·會計 業務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資格을 保有하지 않으면 法律上 行할 수 없는 것으로 定해져 있는 事業의 經營 혹은 管理에 從事하는 活動을 除外한다.)
法律·會計 業務	外國法事務辯護士, 外國公認會計士 기타 法律上 資格을 가진 者가 행하는 것으로 定해져 있는 法律 또는 會計에 關한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醫療	醫師, 齒科醫師 기타 法律上 資格을 가진 者가 행하는 것으로 定해져 있는 醫療에 關한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研究	우리나라의 公私機關과의 契約에 기초하여 研究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一의 表의 教授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教育	우리나라의 小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中等教育學校, 盲學校, 聾學校, 養護學校, 專修學校 또는 各種 學校 혹은 設備 및 編制에 關하여 이것에 準하는 教育機關에서 語學教育 기타 教育을 하는 活動

技術	우리나라의 公私機關과의 契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理學, 工學 기타 自然科學 分野에 屬하는 技術 또는 知識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一의 表의 教授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 및 이 表의 投資·經營의 項, 醫療의 項에서 教育의 項까지, 企業內 轉勤의 項 및 興行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人文知識·國際業務	우리나라의 公私機關과의 契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法律學, 經濟學, 社會學 기타 人文科學 分野에 屬하는 知識을 必要로 하는 業務 또는 外國의 文化에 基盤하는 思考 혹은 感受性을 必要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一의 表의 教授의 項, 藝術의 項 및 報道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 및 이 表의 投資·經營의 項에서 教育의 項까지, 企業內 轉勤의 項 및 興行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企業內 轉勤	우리나라에 本店, 支店 기타의 事業所를 둔 公私機關의 外國 所在事業所의 職員이 우리나라에 所在하는 事業所에 期間을 定해 轉勤하여 當該 事業所에서 行하는 이 表의 技術의 項 또는 人文知識·國際業務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
興行	演劇, 演藝, 演奏, 스포츠 등의 興行에 관한 活動 또는 기타의 演藝活動 (이 表의 投資·經營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技能	우리나라의 公私機關과의 契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産業上 特殊한 分野에 屬하는 熟練된 技能을 要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活動

三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活動
文化活動	收入을 동반하지 않는 學術上 혹은 藝術上의 活動 또는 우리나라 特有의 文化 혹은 技藝에 대하여 專門的인 研究를 行하거나 혹은 專門家의 指導를 받아 이것을 修得하는 活動 (四의 表의 留學의 項에서 研修의 項까지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短期滞在	우리나라에 短期間 滞在하여 行하는 觀光, 保養, 스포츠, 親族訪問, 見學, 講習 또는 會合에의 參加, 業務連絡 기타 이들에 類似한 活動

四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活動
留學	우리나라의 大學 혹은 이것에 準하는 機關, 專修學校의 專門課程, 外國에서 十二年의 學校教育을 修了한 者에 대해 우리나라의 大學에 入學하기 위한 教育을 실시하는 機關 또는 高等專門學校에서 教育을 받는 活動
就學	우리나라의 高等學校 (中等教育學校의 後期 課程을 포함한다) 혹은 盲學校, 聾學校 혹은 養護學校의 高等部, 專修學校의 高等課程 혹은 一般課程 또는 各種 學校 (이 表의 留學의 項의 下欄에 規定된 機關을 除外한다.) 혹은 設備 및 編制에 關하여 이것에 準하는 教育機關에서 教育을 받는 活動
研修	우리나라의 公私機關에 받아들여져 행하는 技術, 技能 또는 知識을 修得하는 活動 (이 表의 留學의 項 및 就學의 項의 下欄에 記載된 活動을 除外한다.)
家族滞在	一의 表, 二의 表 또는 三의 表의 上欄의 在留資格 (外交, 公用 및 短期滞在를 除外한다.) 으로 在留하는 者 또는 이 表의 留學, 就學 혹은 研修의 在留資格으로서 在留하는 者의 扶養을 받는 配偶者 또는 子息으로서의 日當的인 活動

五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活動
特定活動	法務大臣이 각자의 外國人에 대하여 特히 指定하는 活動

別表 第二 (第 2 條의 2, 第 19 條 關係)

在留資格	우리나라에서의 身分 또는 地位
永住者	法務大臣이 永住를 認定하는 者
日本人的 配偶者 등	日本人的 配偶者 혹은 民法 (明治二十九年 法律 第八十九號) 第八百十七條의 二의 規定에 의한 特別養子 또는 日本人的 子息으로서 出生한 者
永住者の 配偶者 등	永住者の 在留資格으로 在留하는 者 혹은 特別永住者 (以下「永住者 등」으로 총칭한다.) 의 配偶者 또는 永住者 등의 子息으로서 우리나라에서 出生하여 그 후 繼續해서 우리나라에 在留하는 者
定住者	法務大臣이 特別한 理由를 考慮하여 一定한 在留期間을 指定하여 居住를 認定하는 者

關聯團體의 一覽表

國連難民高等辯務官事務所 (UNHCR)	東京都渋谷区	03-3499-2075
國際移住機關 (IOM)		03-3595-2487
아시아福祉教育財團難民事業本部	東京都港区	03-3449-7011
日本赤十字社	東京都港区	03-3438-1311
카리타스재팬	東京都江東区	03-5632-4439
立正佼成會	東京都杉並区	03-3383-1111
日本福音 루 데 르 社團	東京都渋谷区	03-3447-1521
레휴지 카운실 재팬 (RCJ)	東京都品川区	03-3444-8865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東京	東京都港区	03-5796-7112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横浜	横浜市金沢区	045-769-0230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大阪	大阪市住之江区	06-4703-2150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神戸	神戸市中央区	078-326-5141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名古屋	名古屋市港区	052-559-2151 - 2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広島	広島市中区	082-502-6060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福岡	福岡市博多区	092-626-5100
外國人在留綜合인포메이션센터・仙台	仙台市宮城野区	022-298-9014

難民認定業務圖解

